## 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

[춘천지방법원 2008. 1. 24. 2007고정257]



## 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김대룡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이홍렬

【주문】

]

피고인들을 각 벌금 2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 1,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유치한다.

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